

실업인정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)신청서

※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및 2쪽 모두 작성하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3쪽 중 1쪽)

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

신청인 (수급자격자)	①성명	②주민등록번호	-
	③주소 [휴대전화번호(없는 경우 전화번호):]		

④지정된 출석일(실업인정일) ⑤실업인정대상기간

⑥지급계좌	신규신청[] 변경[]	은행명: 예금주: 계좌번호: ※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, "압류방지 전용통장"을 발급받아서 적습니다.
-------	------------------	--

⑦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등 확인	근로사실 및 소득발생	없음[] 있음[]	근로 또는 소득 내용 [] 근로날짜 [] 소득금액 [] 소득예정금액 []				
	사업자등록 (자영업개시)	[] 없음 [] 있음 (등록일(시작일): 사업내용:)					
	산재휴업급여	[] 없음 [] 있음 (수급기간:)					

⑧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확인	구직활동	일자	업체명	전화번호	직종	구직방법	구직활동 결과
	자영업 준비활동						
	취업(예정) 내역	[] 취직 [취직(예정)일: 회사명: 전화번호:] [] 자영업 [시작(예정)일: 사업내용:]					
	구직활동 외 활동사항	내용	[] 고용센터 집체교육 [] 취업확정자 [] 직업지도 참여(취업특강 등) []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[] 집단상담 프로그램 [] 부당하고 구제신청자 [] 직업훈련 수강 [] 재취업활동 없는 자 [] 기타 []				

⑨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	[] 휴대전화 문자메시지
※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	[] 전자우편(이메일:)

「고용보험법」 제44조제2항·제3항·제69조의9·제77조의5제2항·제77조의10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·제66조·제93조의2·제104조의8제8항·제104조의15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·제115조의5·제125조의4·제125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,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👉 2쪽에 추가 작성란 있습니다. ※아래의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실업인정 유형	[] 실업인정일 변경 []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[] 잠정실업인정 []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[]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[]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					
	지급 사항	처리	실업인정일수	구직급여 산출명세	지급액	
		미지급사유				
결재	담당	팀장	과장	청장·지청장	결재연월일	

- ※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이미 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.
- ※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에 체크합니다.
- ※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	[] 신청함 [] 신청하지 않음
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	[] 우편 [] 전자우편 (주소:) []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자전송
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희망 여부 (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.)	[] 희망함 [] 희망하지 않음
④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는 지원이 제외됩니다)	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이름
성명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※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·보관되지 않습니다.

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」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, 그 금액의 2배 또는 5배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년(3년)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(3천만원)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: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에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
-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신청인 성명,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
-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: 해당 실업인정 신청 후 3년
-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: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

(서명 또는 인)

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1, 2쪽을 작성하기 바랍니다.

작성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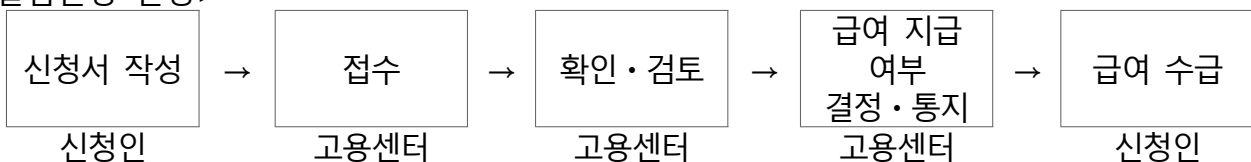
1. 실업인정 신청서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작성합니다.
2. ① · ② · ③란은 모두 적습니다.
3. ⑤란에는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(실업인정일)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.
4. ⑥란에는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,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("압류방지 전용통장" 발급은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).
5. ⑦란의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 작성방법<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>
 -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(공공근로, 일용, 아르바이트, 예술인, 노무제공자 등 취업형태 구분 없이 모두 작성)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있음을,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.
 - 있음을 선택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오른쪽 칸의 내용을 적습니다.
 - 근로 또는 소득 내용: 어떤 일을 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는지 적습니다. (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한 일 또는 발생한 소득만 적습니다)
 - 근로날짜: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날의 날짜를 모두 적습니다.
 - 소득금액: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받은 소득의 총액을 적습니다.
 - 소득예정금액: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했지만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을 하고 받기로 예정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에는 본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 활동을 시작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.
7.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면 적습니다.
8.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는 사람만 적습니다.
9. ⑧란 중 취업(예정)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.

유의사항 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)

1.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로써,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.
2.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,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/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/4이 지원됩니다.

처리절차

<실업인정 신청>



<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>

